

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구 지부 운영규정

제정 2008.06.26.
개정 2013.11.13.
개정 2014.06.25.
개정 2017.02.22.
개정 2018.10.30.

제1장 총 칙

제1조(근거 및 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(이하‘장애인체육회’라 한다.) 규약 제5조제3항에 의해 지부로 설치된 구 장애인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6.25., 2018.10.30.>

제2조(명칭 및 주소) 각급 구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의 지부로서 지역을 통할할 수 있는 용어로 ○○○구 장애인체육회라 정하고, 영문명칭도 정해야 하며 사무소는 각 구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4.6.25>

제3조(설치목적) 구 장애인체육회는 지역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시키며,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관리·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지역 장애인의 체육·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6.25., 2018.10.30.>

제4조(사업) 각 구 장애인체육회는 제3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.

1. 지역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
2. 지역 장애인 경기단체와 유형별 체육단체의 관리·지원 <개정 2014.6.25.>
3. 장애인생활체육 교실운영·대회 개최·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전개
4. 구 지역 및 지역 간의 장애인체육 교류
5. 지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최·주관·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참가·주최·주관·후원·지원 등
6. 전국장애인체육대회(동·하계, 학생) 해당 지역선수단 훈련 및 참가 <개정 2014.6.25., 2018.10.30.>

2018.10.30.〉

7.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역 장애인체육의 육성
8. 특수학교·통합학급의 체육활동 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과 통합체육 수업 보급〈개정 2014.6.25.〉
9.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
10. 장애인체육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
11.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, 각종 간행물 발행
12. 지역 장애인 체육정책 실현 및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·자문〈개정 2014.6.25.〉
13.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〈신설 2014.6.25.〉

제2장 조 칙

제5조(조직) 구 장애인체육회는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종목별 경기단체와 유형별 체육 단체를 가맹 승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는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부터 우선 구지부로 우선 승인받아야 한다.〈개정 2014.6.25.〉

제6조(권리와 의무) ① 각 구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〈신설 2014.6.25., 개정 2017.2.22.〉
② 각 구 장애인체육회는 사업계획서, 예산서,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〈신설 2014.6.25.〉

제7조(가맹 및 탈퇴) ① 각 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가맹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〈개정 2014.6.25.〉
② 각 구 장애인체육회는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가맹·탈퇴규정에 따랐을 때 정한다.〈개정 2014.6.25.〉

제3장 임 원

제8조(임원) ① 구 장애인체육회의 이사회 구성 및 기능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.〈개정 2014.6.25., 2017.2.22.〉
② 집행부의 선임임원 수는 각 구 장애인체육회의 실정에 맞추어 운용할 수 있다.

제9조(임원의 결격 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구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과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7.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, 민간단체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8.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, 민간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9.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, 민간단체 등에서 (성)폭력, 승부조작, 직권남용 등의 비위, 또는 해태나 관리 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
 10. 해당종목 관련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자
- ② 회장의 친족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그 구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④ 임원이 제①, ②, ③항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. <신설 2014.6.25. 개정 2018.10.30.>

- 제10조(선임임원)** ① 임원의 선임, 보선 및 임기는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규정된 바에 준한다.
<개정 2014.6.25.>
- ② 구 장애인체육회장에는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하여야 한다.
- ③ 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은 집행부의 당연직 이사이다.
- ④ 이사 정수에 5인 이상은 해당 지역 가맹단체의 대표를 선임하되, 해당지역 유형별 체육단체장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⑤ 이사에는 장애인선수 출신과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%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<신설 2014.6.25.>

- 제11조(각종 위원회)** ① 구 장애인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생활체육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,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4.6.25.>

제12조(구 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) ①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 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하여 징계 수위를 정하여 해당 구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.

1.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지부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, 해당 지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
 2.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
 3. 공금횡령, 편파판정, 승부조작, 폭력,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
 4. 해당 지부의 규정을 위반한 자
-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법제·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4.6.25.]

제4장 가맹단체

제13조(가맹자격)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가맹지부만이 구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한다. <개정 2014.6.25.>

제14조(조직 및 운영) ① 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을 따른다. <개정 2018.9.18.>

- ②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 규정 제19조에 따른 징계 요구시 구 장애인체육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상위 가맹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2.22., 2018.10.30.>

[본조신설 2014.6.25.]

제15조(적용) 가맹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4.6.25>

제5장 산하 각급 장애인체육회

제16조(각급 장애인체육회) ① 구 장애인체육회 산하 조직은 필요에 의해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. <개정 2014.6.25.>

- ② 산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 장애인체육회의 제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4.6.25.>

제17조(조직구성) 산하 각급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로 조직한다.

1. 해당지역내 거주하는 자로서 장애인체육 또는 체육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

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해당 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하는 개인

2. 상급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한 가맹단체 해당지부 및 장애인 체육단체

제18조(임원구성) ① 산하 각급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의 정수는 당해 산하 각급장애인체육회의 실정에 맞추어 정하여 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6.25.>

② 산하 각급 장애인체육회장에는 해당 동의 동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14.6.25.>

③ 본조 2항외 당연직 이사의 구성은 동 규정 8조를 준용하여야 한다. 다만 산하 각급 장애인체육회의 사정이 있을 경우 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으로 일부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4.6.25.>

제19조(사업) 산하 각급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사업을 행한다.

1. 각종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<개정 2014.6.25.>
2. 각종 장애인체육 육성·지원 및 동호인 클럽 지원 <개정 2014.6.25.>
3. 기타 장애인 체력증진을 위한 각종 체육사업 <개정 2014.6.25.>

제20조(조직운영) 산하 각급 장애인체육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및 각 구 장애인체육회의 규약을 준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6.25.>

제6장 자산 및 회계

제21조(자산의 구분) 구 장애인체육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.

1. 소유동산 및 부동산
2. 기금
3. 회비
4. 장애인체육회 지원금 <개정 2014.6.25.>

제22조(예산편성 및 결산) ①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안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6.25.>

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3조(기금 및 적립금)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운용 할 수 있으며 이는 특별회계로 한다. <개정 2014.6.25.>

제24조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장애인체육회와 동일하게 한다. <개정 2014.6.25.>

제25조(회계감사)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가맹단체 및 각급 장애인체육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.

제7장 사무국

제26조(사무국) ① 구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. <개정 2014.6.25.>

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직무를 관장하며, 직원의 임면은 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되,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.

④ 직원은 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및 장애인체육회 산하 각급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. <신설 2014.6.25.>

제27조(직제 및 규정) ① 사무국의 기구, 조직,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이를 따로 정한다.

② 사무국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,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한다.

제8장 보 칙

제28조(규정 제·개정 및 해석) ① 구 장애인체육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구 장애인체육회 규약(정관)을 제·개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이 외에 당해 구 장애인체육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·개정한다.

③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구 장애인체육회의 규약(또는 정관으로 이하 같다)은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수정이 있을 때마다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보고된 규약에 대하여 개·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6.26.>

④ 이 규정은 구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우선하며, 당해 단체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당해 단체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.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구 장애인체육회 규약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7.2.22.>

[본조신설 2014.6.25.]

제29조(제한사항) 본 규정 및 규약 등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

우 장애인체육회는 제6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장애인체육회 지원금 또는 지원사항을 중단, 회수,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6.25., 2017.2.22.>

제30조(관련당사자간의 분쟁해결) 구 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중앙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 및 시·도 가맹단체를 포함하여 당해 지부의 가맹단체 및 산하 각급체육회 구성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법제상벌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7.2.22., 2018.10.30.>

[본조신설 2014.6.25.]

부 칙(2014.6.25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10.3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